

친환경 축산물이 뜨고 있다

# 국내 친환경축산 현황과 외국의 사례



최희철 연구관/농학박사  
국립축산과학원 기금과

수질·토양·대기오염을 방지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물질의 자원순환 등을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를 유지·보전하며 동물복지 등을 통한 자연치유력의 회복 등으로 가축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주변 자연과의 조화로 농촌의 경관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7년도에 우리 실정에 맞는 친환경 축산 표준모델을 설정했으며 이 모델을 바탕으로 친환경축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축방역, 축산물안전성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과 이력추적시스템 등 선진제도의 기반 구축을 위해 일정한 사육밀도 유지 등을 준수요건으로 하는 축산업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2008년 12월 현재 78,297농가(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축산업등록기준은 가축 사육 시설에 대한 적정 사육밀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친환경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에 따라 축산농가도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좁

은 농경지와 초지면적 등 축산 선진국에 비해 여건이 열악하여 아직 변화의 속도는 매우 느리다.

## 1. 친환경축산 인증 현황

선진 유럽은 매년 유기농축산업이 20%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유기축산인증은 2005년 5월 시작되어 아직 시작단계이며 2008년 말 현재 162농가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을 획득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이 2006년 9월 27일 개정되었으며, 시행규칙이 2007년 3월 28일 시행되면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이 개시되었고 2008년 12월말 현재 2,742호로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쇠고기 1,860호, 돼지고기 123호, 닭고기 228호, 계란 436호, 젓소 16호 등으로 한우사육농가와 양계농가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친화형 축산농장은 18호가 신청하여 강원도 범산목장(젓소), 제주 봉영농장(돼지) 등 2농가가 지정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보완 및 심사 진행 중에 있다. HACCP 적용 농장(2008. 12. 31)은 380호로서 소 118호, 돼지 220호, 닭 42호로 양돈농가에서 가장 많이 인증을 받았다.

## 국내 친환경축산 현황과 외국의 사례

〈표 1〉 친환경축산물 인증현황

(2008. 12월 현재)

축종	축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합계
쇠고기	건수	9	448	457
	농가수	37	1,860	1,897
	사육두수(천두)	1	145	146
	출하량(톤)	13	9,528	9,541
돼지고기	건수	3	66	69
	농가수	18	123	141
	사육두수(천두)	2	146	148
	출하량(톤)	144	8,386	8,530
닭고기	건수	5	173	178
	농가수	18	228	246
	사육두수(천수)	95	15,953	16,048
	출하량(톤)	134	20,727	20,861
계란	건수	20	346	366
	농가수	26	436	462
	사육두수(천수)	76	20,112	20,188
	출하량(톤)	793	92,320	93,113
우유	건수	10	16	26
	농가수	63	16	79
	사육두수(천두)	3	1	4
	출하량(톤)	10,123	1,676	11,800
기타	건수	-	76	76
	농가수	-	79	79
	사육두수(천두)	-	2,235	2,235
	출하량(톤)	-	4,441	4,441
합계	건수	47	1,125	1,172
	농가수	162	2,742	2,904
	사육두수(천두)	176	38,592	38,769
	출하량(톤)	11,207	137,079	148,286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축산물이 뜨고 있다

# 국내 친환경축산 현황과 외국의 사례

## 2. 친환경축산의 개념

### 1) 환경보전

수질·토양오염 및 악취를 포함한 대기오염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다.

### 2) 자원순환(자연생태계 유지·보전)

가축분뇨의 퇴비화, 액비화 등을 통해 경지에 환원해야 한다.

### 3) 가축건강

가축의 성장, 번식 및 행동특성을 만족시키고 복지를 고려한 좋은 사육환경을 제공하여 가축의 건강성을 유지시킴으로써 질병발생을 줄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일정한 가축 생활공간을 제공해주고, 사양관리, 질병·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동물을 복지적으로 사육해야 한다.

### 4) 경관보전

주변경관과의 조화는 물론, 농촌다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목장구성요소인 진입로, 축사 내외부, 퇴비사 등에 대한 환경미화(주변의 조경, 채색, 청결유지 등)와 지역사회 및 소비자와의 조화 등이 필요하다.



〈그림 1〉 환경친화 양계농장 표준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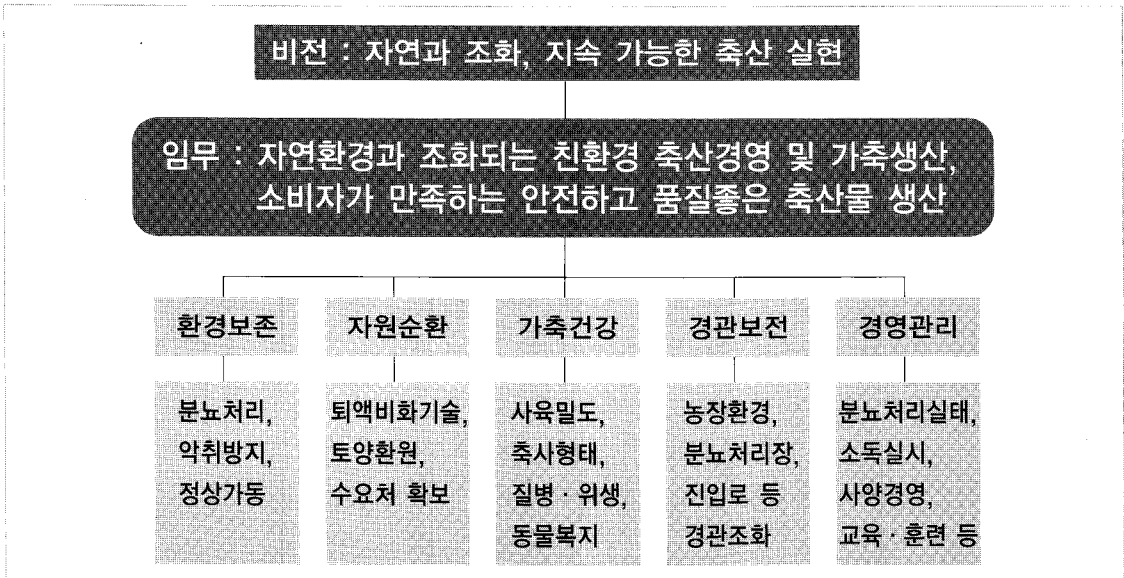
### 5) 경영관리

경영자의 친환경축산 실천의지 고양과 행정기관 및 농장의 관리 효율향상을 위해 가축의 위생·질병관리,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토양환원, 가축의 사양관리 등과 관련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친환경축산 관련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3.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도입

대내적으로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도입,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의 도입, 농지내 축사진입 용이 등 친환경축산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육성법이 2007년 3월 28일에 개정 시행되면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농지법이



〈그림 2〉 친환경 축산 모델 제시 : 환경친화축산농장

2007년 7월 4일 개정 시행되면서 농지의 범위에 축사부지가 포함되어서 농지에 축사 건축이 용이해졌다.

웰빙붐과 함께 소비자들의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구매패턴 변화로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급증 추세에 있으며 깨끗하고 가축의 건강성을 유지하며 주변의 경관과 조화되는 축사시설 등 친환경축산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친환경축산 표준모델'을 개발(2007. 12)했다. 국가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등 항생제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축산물 인증, HACCP지

정, 환경친화농장 지정 등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생산과 환경보전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업 참여자의 모니터링을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농산물품질관리원), HACCP 지정(HACCP기준원), 환경친화농장 지정(농식품부)을 받은 농가에 한하여 객관적인 거래내역증명서(세금계산서, 정산서 등) 근거자료를 통해 입증될 때 지원한다.

1) 지원 대상

유기·무항생제축산물 등 친환경축산물 생산과 환경보전, 질병·위생관리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친환경농

친환경 축산물이 뜨고 있다

# 국내 친환경축산 현황과 외국의 사례

〈표 2〉 축종별, 친환경축산물 인증 종류별 직불금 지급내역

구분	한우	젓소(우유)	돼지	육계	산란계(계란)
유기	170,000원/두	50원/l	16,000원/두	200원/수	10원/개
무항생제	65,000원/두	10원/l	6,000원/두	60원/수	1원/개

※ 육우는 한우의 50% 지급, 토종닭은 육계의 30% 증액 지급한다.

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판매하는 농가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HACCP 지정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농가의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대상농가는 축산업등록, 원유수급관리 적용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대상축종은 한육우·젓소·돼지·닭 등 4개 축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오리, 사슴 등에 대하여는 여건을 봐가면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2) 프로그램 이행여부의 확인

친환경축산 이행여부 확인은 쉽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HACCP 지정,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유지 여부 등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하며 친환경(유기·무항생제)축산물 생산실적은 거래내역증명서(세금계산서, 정산서 등)와 같이 객관적 근거자료를 통해 농가에서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3) 사업시행기관과 사업시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9년부터 시행

## 4) 지급 기준

① 농가의 사육규모가 아닌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경종농산물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시행초기엔 3년간 지급한다.

### ② 지급단가

- 농가에서 직불제 프로그램 이행에 따라 초기에 늘어나는 추가적인 생산비 요인(사료비, 시설·사양관리비용 증가 등)과 소득 감소분(생산량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지급한도는 농가별로 최대 2천만원으로 제한하되, 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하여는 지급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

## 국내 친환경축산 현황과 외국의 사례

〈표 3〉 친환경축산직불제와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비교

구분	친환경축산직불제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
대상농가·축종	대상농가 : 축산업등록 농가 대상축종 : 한육우, 젓소, 돼지, 닭	대상농가 :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판매하는 농가로서 HACCP 지정 농가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시 인센티브 대상축종 : 한육우, 젓소, 돼지, 닭
프로그램내용	기본프로그램 - 조사료포 확보, 분뇨 토양환원 * 돼지·닭은 사육밀도 완화 인센티브 : 조경수 식재 등	프로그램 ○ 친환경(유기·무항생제)축산물 생산·판매실적에 따라 지원 ○ HACCP 지정 인센티브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지급기준	호당 1,500만원 한도(기본 1,300, 인센티브 200) ※ 2006년 평균지급액 : 750만원/농가	지원한도 상향 조정 ○ 호당 2,000만원 한도 (인센티브시 400만원 추가)
사업시행자	시장·군수·구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프로그램 이행실적 확인	조사료포 확보, 분뇨 토양환원, 사육밀도 유지 여부 등을 이행기록 장부 및 관련 자료를 참고로 하여 확인	유기·무항생제 생산·판매실적은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농가에서 입증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유지 여부 등은 공부 등을 통해 확인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하며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을 달리 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한다.

-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상위 인증 단계로 변경될 경우에는 신청당시 인증종류로 지급하고, 하위 인증단계로 변경 시에는 변경된 인증종류로 지급한다.

### 4. 외국의 친환경축산직불 사례

#### 1) 영국

육우와 젓소에 대하여 생산을 억제하고 낮은

사육 밀도 유지하기 위해 조방화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지급한다. 단순형의 경우 ha당 1.4두(LU) 이하 시 두당 100유로를 지급하고 있으며 표준형의 경우 ha당 1.4두(LU) 이하시 두당 80유로, 1.4~1.8두(LU)는 두당 40유로를 지급한다.

또한 조건 불리지역 활성화 및 농촌경관 유지를 위해 중산간지역의 압소·양 사육농가에 대하여 최소 10ha이상 초지(우유생산용 초지 제외)와 ha당 0.15두(LU) 이상의 가축 보유시 지역불리도 및 초지면적에 따라 25~68유로를 차등 지급한다.

친환경 축산물이 뜨고 있다

## 국내 친환경축산 현황과 외국의 사례

또한 초지면적 350ha 초과분은 50%, 700ha 초과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농가들은 방목을 과도하게 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 가축과 목초지를 건강한 조건으로 유지해야 하며 초지가 가축에 의해 지나치게 밟히거나 짓눌리지 않아야 하며, 사료수송차량의 바퀴자국이 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토양, 물, 공기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보조 수령후 5년 이상 축산업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2) 스위스

방목가축의 경쟁력을 높이고 초지 및 경관 유지 등을 목적으로 동·하절기 방목농가에 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단가는 사육규모별로 차등지급되며 노동력당 지급액 한도가 정해져 있고 동절기와 하절기가 다르게 지급되며 산간지역은 더 많은 초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축사에서 밧줄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리를 지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연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축사를 운영해야 하며 소는 매월 25일 이상 방목사육(동절기는 13일 이상)해야 한다.

돼지와 닭의 경우에도 옥외사육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직불금을 지급받는 농가는 주별

로 규정한 친환경조건과 동물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3) 미국

미국은 2002년에 제정된 신농업법에 의하여 환경의 질 개선 프로그램(EQIP) 규정을 보완했으며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시설설치비용을 지원하며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유익한 방법을 실행하려는 농가를 지원한다.

계약기간은 1~10년간이며 계약한 첫해부터 지급이 가능하고 지원농가는 EQIP 실행계획서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자연자원보전기관(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s)에 제출하면 이 자료를 평가하여 우수한 농가에 대하여 지원하며 2002부터 2007년까지 6년 동안 개인 또는 경영체당 최대 \$450,000을 지원했다.

지급비율은 실제 소요비용(actual cost)의 75%까지 지원하되, 제한된 자원을 보유한 농가(저소득농가), 신규농업인 또는 10년미만 농업 종사자에게는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 전체예산 중 60% 이상을 축산관련 분야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축산농가가 계약서에 분뇨저장시설을 포함할 경우에는 분뇨처리, 사체처리 등 종합영양관리계획서(Comprehensive Nutrient Management Plan)를 제출해야 한다. 